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 침해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53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2
2.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 손해배상·보험 의무 강화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강화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이나 불만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반복되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대응에 의존해 왔고,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①·② (생략) <u><신설></u>	제32조(이용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u>

③ ~ ⑥ (생략)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
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
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
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
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
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 12.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
까지와 같음)

⑧ -----제7항-----

-----.

제96조(벌칙)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제5항-----

9의2. 제32조제6항-----

9의3. 제32조제6항-----

10. ~ 12.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 ----- ----- ----- -----. -----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자	4의3. 제32조제4항----- ----- -
4의4. ~ 4의7. (생략)	4의4. ~ 17. (현행과 같음)
5. ~ 17. (생략)	5. ~ 17.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서비스 확대를 통해 SKT 망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제공하였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SKT 해킹사태에서 SKT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발표에 따라, SKT는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SKT의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정부 발표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SKT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대응이었음.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동 개정안 해당 부분(안 제32조제3항)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인해 신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심 교체, 유심보호 서비스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적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음.
-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줄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면도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면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용자의 신청·동의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보호조치의
금지행위와의 상충 관계에 대한 검토 필요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인 신청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손해 방지를 위한 특정 서비스 등의 가입 해지나 가입 전환 대행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2)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신청이나 동의 없이 손해 방지를 위한 특정 서비스 등의 가입 해지 대행, 가입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현행법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고 사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SKT 이용자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나목2)3)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특정 서비스 등의 가입 해지 등에 대해서도 금지행위와 법률 내용 간 상충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신설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이행 수단 검토 필요

- 동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이용자(명의를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 의무이행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사업자 전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동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를 의무 조치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침해사고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통신산업의 리스크 증가로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우려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입전환 또는 가입해지 비용 면제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과실 책임 여부와 이용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역무 제공 중단에 따른 피해와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로 구분되며, 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한 피해, 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1차 피해)와 금전적 피해(2차 피해)를 의미함. 따라서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라고 규정할 경우 서비스 중단까지 포함되는 바, ‘정보가 유출되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와 같이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수범자를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로 국한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안 제32조제3항)은 정보통신망 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심 교체 및 보호 서비스 등 예방적·신속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이용자의 신청·동의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보호조치의 금지행위와의 상충 관계, 신설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 이행 수단 필요 등과 소관 부처의 가입 전환·해지 비용까지 사업자에 부담이 발생해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2.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 손해배상·보험 의무 강화

이번 SKT 해킹 사고에서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해킹으로 발생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해당 사업자의 과실을 인정 한 이후에야 SKT가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33조(손해배상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3. 제32조제3항에 따른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 해당 부분(안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명확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험 등을 통해 배상 능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대규모 사고에도 안정적인 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보험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보안 투자와 관리가 강화되고, 예방적 조치가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배상과 피해 회복이 가능해져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손실⁵⁾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등 손해배상 책임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⁶⁾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

5) SKT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유출된 유심(USIM) 정보가 약 2,695만 건에 달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해 SKT는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한 위약금 면제, 7,000억 원 규모의 보안 강화 등을 포함한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리자(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포함)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손해배상 부분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 「민법」 제750조⁷⁾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중복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

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도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 고려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⁸⁾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의 보험 가입 의무가 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⁹⁾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타 법의 유사한 보험가입 의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서비스 역무제공 중단과 관련된 이용자 손해의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에 이용요금 면제 등의 다른 수단이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발생이나 처리 지연에 대한 손해의 경우 개별적 사안으로 대규모 금액의 손해 발생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액의 발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와 관련되는 면이 크다고 보임.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태양을 고려한 내용 수정 검토 필요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해커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므로, 동 개정안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전기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를 발생시켜 이용자에게 손해를 직접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대응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법 위반 행위 포함)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을 이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의 손해배상 입법례의 경우에도 외부의 불법 행위 발생 시 경비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비업법」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에 명시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타 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 입법례>

법률	손해배상책임 조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u>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u>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비업법」	○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u>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u>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u>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u>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u>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u>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손해배상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등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전

기통신사업자의 입증책임(사업자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 과실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면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 제33조제3항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불필요한 보험 가입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미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비스 특성 및 타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 내지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33조제3항의 신설 부분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역무제공의 중단과 관련한 이용자 손해의 경우 중단된 기간에 상응한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손해 배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대비한 별도 보험이나 공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침

해사고에 따른 손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라 볼 수 있을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 내지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다시 보험 내지 공제 가입 의무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회원사 개별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3개사의 경우 현행법 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 및 보험 의무 신설을 반대하고 있음.

1개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보험 도입은 수용이 가능하나, 가입대상을 일정 이용자 수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나, 이용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안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등 배상 능력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내용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등 손해배상 책임과의 중복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 고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태양을 감안할 필요와 소관 부처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비용의 이용자 전가 우려 의견 등을 판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